

##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8. 20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8. 2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8. 26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혜)

가. 제안이유

-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의 보장 및 위탁에 따른 민원해소
-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·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·의무에 대한 공원관리청에의 허가·신고를 자율에 맡기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-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 건축물의 설치요건 완화

나. 주요골자

-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함(안 제5조)
- 도시공원입장료와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입장료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자율화함(안 제7조)
-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

용하였으나, 앞으로는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,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함(안 제1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관내 도시공원수는 몇 개입니까? 그리고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?	○ 총 201개이며,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.
○ 제7조의 입장료는 왜 규정되었는지요?	○ 앞으로 받을 때를 대비하여 규정되었습니다.
○ 이번 개정되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연 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까?	○ 제5조는 상위법 개정과 무관하며, 나머지는 관 련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.
○ 제15조는 기존건물만 해당되고 신축건물은 해 당되지 않습니까?	○ 그렇습니다.
○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요구하고 있는데 위탁이 가능합니까?	○ 도 지침에 장애인에게는 3~4명으로 정하고 있 기 때문에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, 위탁방 법도 공개입찰입니다.
○ 그 동안 피위탁자가 바뀌었습니까?	○ 2번 바뀌었습니다.
○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 위탁료는 어떻 게 됩니까?	○ 2년 간으로 산정합니다.
○ 위탁료가 많아지면 영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 지 않을까요?	○ 피위탁자가 2년으로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입 장입니다.
○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공사 및 사업의 특 수성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? 그리고 사례가 있습니까?	○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입니다.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.
○ 본 단서조항이 포괄적이고 해석상 예매모호하 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?	○ 운영상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. 신축성있 게 검토요망하겠습니다.
○ 이미 조성된 공원 내에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 니까?	○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첨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206호
의결년월일	99. 8. 27 (제72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6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의 제5조제1항 단서조항인 “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”의 규정은
-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범위인정 판단이 애매모호하며 해석자와 집행자 자의적 해석에 따라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제5조제1항 단서조항 “다만,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”를 삭제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(관리·위탁 등의 기간) 제1항의 단서조항 “다만,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”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관리·위탁 등의 기간)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기간은 <u>1년으로</u> 하며,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. <u>다 만,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5조(관리·위탁 등의 기간) ①· ..... ..... <u>2년으로</u> ..... ..... <u>다만,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5조(관리·위탁 등의 기간) ①·... ..... ..... ..... <u>(삭제)</u> ..... ..... ....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년으로”를 “2년으로”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제2호 중 다목의 “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 등이 증가하는 경우(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)”를 “중축 후의 층수가 3층 초과시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(녹지의 경우에도 같다)”로 하고, 마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